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 번 호	22033
-------------	-------

발의연월일 : 2023. 5. 16.

발의자 : 서삼석 · 이개호 · 한준호

소병훈 · 서동용 · 김승남

이상현 · 임호선 · 장경태

송옥주 · 윤후덕 의원

(11₁^o)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여 양식장이나 수산종자생산 시설에서 기르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수산자원의 이식(移植)에 관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을 받지 않고 수산자원을 이식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이식이 금지되거나 이식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반입된 수산자원을 유통하거나 판매한 경우 등에 대한 처벌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불법으로 반입된 외래 김 종자 등이 유통·판매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국내 수산종자생산업과 양식산업에 대한 생산·유통질서의 확립이 필요할 실정임.

이에 수산자원의 이식에 관한 명령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이식한 자뿐만 아니라, 해당 수산자원을 소지·유통·보관 또는 판매한 자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수산자원과 수생

태계를 보호하고 수산종자산업 및 양식산업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7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7호 중 “자”를 “자와 그 수산자원을 소지·유통·보관 또는 판매한 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4조(별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조(별 칙) ----- ----- -----. 1. ~ 6. (생 략) 7.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의 이식을 한 <u>자</u>
8. ~ 13.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 ----- <u>자와 그 수산자원</u> <u>을 소지 · 유통 · 보관 또는</u> <u>판매한 자</u> 8. ~ 13. (현행과 같음)